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10

발의연월일: 2021. 2. 19.

발 의 자:유의동·강대식·강민국

권성동 • 권은희 • 김기현

金炳旭・김성원・김형동

서병수 · 성일종 · 안병길

윤주경 • 이 용 • 정진석

황보승희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복지 사업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에너지복지 사업 대부분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에 의존 하고 있어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제4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실시"를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 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u>실</u>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u>실</u>
<u>시</u>) (생 략)	<u>시 등</u>)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
	분과 같음)
<u><신 설></u>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
	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
	<u>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u>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에 따라야 한다.
<u> <신 설></u>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u>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